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에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1명, 7급 1명, 경정 1명, 경감 1명)을 증원하되 검찰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고, 변호사시험을 컴퓨터 작성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국제형사 사법공조를 전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국가송무의 안정적인 총괄과 선진화된 송무 체계의 구축·유지를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만 보하던 송무심의관을 검사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 소속기관인 부산소년원에 신축 생활관 감호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7급 1명, 8급 2명, 9급 2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김해국제공항 터미널 확장에 따른 출입국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출장소에 체류관리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6급 2명, 7급 5명, 8급 2명, 9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교도소·구치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원 117명(7급 51명, 8급 66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조정(6급 51명, 7급 66명)하면서 정원 5명(9급 5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2. 29. ~ 3.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3조제3항 중 “1명(5급 1명)은 여성가족부”를 “1명(5급 1명)은 여성가족부, 2명은 검찰청(6급 1명, 7급 1명), 1명은 경찰청(경정 1명), 1명은 해양경찰청(경감 1명)”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780”을 “786”으로 하고, 일반직 계 “742”를 “745”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6”을 “5”로,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732”를 “73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2”를 “4”로 하며, 총경 이하 “2”를 “4”로 하고, 검사 계 “30”을 “31”로 하며,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10”을 “11”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22,938”을 “22,954”로 하고, 일반직 계 “22,919”를 “22,93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2,713”을 “22,729”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법무실) ① (생 략) ② <u>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u> ③ (생 략)	제9조(법무실) ① (현행과 같음) ② <u>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u>
제53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② (생 략) ③ <u>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경정 2명)은 법무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급 1명)은 여성가족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u> ④ (생 략)	제53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명(5급 1명)은 여성가족부, 2명은 검찰청(6급 1명, 7급 1명), 1명은 경찰청(경정 1명), 1명은 해양경찰청(경감 1명) -----. -----. ④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6]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5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80</u>	<u>786</u>	+6
·	·	·	
·	·	·	
일반직 계	<u>742</u>	<u>745</u>	+3
고위공무원단	<u>6</u>	<u>5</u>	-1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u>732</u>	<u>736</u>	+4
·	·	·	
경찰공무원 계	<u>2</u>	<u>4</u>	+2
총경 이하	<u>2</u>	<u>4</u>	+2
검사 계	<u>30</u>	<u>31</u>	+1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u>10</u>	<u>11</u>	+1
·	·	·	

[별표 7]

법무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4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2,938</u>	<u>22,954</u>	+16
일반직 계	<u>22,919</u>	<u>22,935</u>	+16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2,713</u>	<u>22,729</u>	+16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72